

#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35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5年 10月 16日(月) 11時15分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第35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2. 第35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1995年度下半年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計劃報告의件
4. 大和都市計劃事業決定에對한意見提示의件
5. 休會의件

##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1 面
2. 執行部幹部公務員新任人事 \_\_\_\_\_ 2 面
3. 第35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議長提議) \_\_\_\_\_ 3 面
4. 第35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_\_\_\_\_ 3 面
5. 1995年度下半年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計劃報告의件(禹康鎬議員外6人發議) \_\_\_\_\_ 3 面
6. 大和都市計劃事業決定에對한意見提示의件(平昌郡守提出) \_\_\_\_\_ 5 面
7. 大和都市計劃事業決定에對한意見提示動議(李洙現議員發議) \_\_\_\_\_ 6 面

6. 休會의件(議長提議)

6 面

(11時15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군정주요사업장파수해피해현지를 돌아보고 중요 조례안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1時18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報告事項은 끝에실음 )

○ 議長 金樂雲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執行部幹部公務員新任人事

(11時19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 새로 부임한 집행부 간부 인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인사)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대현 지적과장 인사)

3. 第35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議長提議)

(11時20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參 照 >

. 議事日程

( 끝에실음 )

.....

4. 第35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21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2항 제3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수현의원과 김두경의원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年度下半年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計劃報告의件(禹康鎬議員外6人發議)

(11時22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보고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평창군의회가 매년 상.하반기로 군정주요투자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누수없는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자료를 수집 군정에 반영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번 임시회 기간중 의원간

사전 합의에 따라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입니다.

그럼 본 계획을 작성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강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1995년도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34회 임시회 이후 휴회 기간중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합의에 따라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적은 연중계획된 사업이 일관성 있고 투자가 효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책개선의 자료로 삼아 보완, 시정하므로 시책추진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확인기간은 '9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사업은 '95년도 군정주요투자사업중 평창군 본청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발주사업, 그리고 집행부 관련 사업으로

총58건으로 하였습니다.

확인반은 전체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 하였으며 사무보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확인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7일 도암면부터 시작하여 10월 26일 평창읍을 끝으로 8일간의 현지확인일정을 마치고 10월 27일에는 확인결과를 종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동안 해당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상황 설명을 청취한다음 대상사업장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지확인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 1995年度下半年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計劃

( 附錄에 실음 )

.....  
○ 議長 金樂雲 : 지금 우강호 의원께서 보고한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럼 다른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6. 大和都市計劃事業決定에對한意見提示의件(平昌郡守提出)

(11時24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4항 대화 도시계획사업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는다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도시과장 권순철입니다.

도시계획사업결정에따른 의견제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최근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해서 관계청의 의견을 거쳐 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화의 문화마을 조성에 따라서 평창군수가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를 할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 大和都市計劃事業決定에對한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大和都市計劃事業決定에對한意見提示  
動議(李洙現議員發議)

(11時28分)

다음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 채택할 순서입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발언 하십시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선 그동안 주민공청회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반영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본건은 평창군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다고 찬성의견을 제시할것을 동의 합니다.

○ 議長 金樂雲 : 지금 이수현 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럼 이수현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소리가 없음 )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현의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확인 )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중 전원의 찬성으로 이수현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休會의件 (議長提議)

(11時30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합의된대로 '9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9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현지확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0월 28일 1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11時31分 散會 )

○ 出席議員

- 議 長 金 樂 雲
- 副議長 李 相 薰
- 議 員 李 慶 鎮
- 議 員 劉 燉 文
- 議 員 李 洙 現
- 議 員 金 斗 經
- 議 員 禹 康 鎬
-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 郡 守 金 容 郁
- 副 郡 守 朴 商 滿
-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 企 劃 室 長 申 大 松
- 文化公報室長 高 昶 植
- 內 務 課 長 李 永 德
- 社會振興課長 宋 在 明
- 財 務 課 長 權 赫 昇
- 地 籍 課 長 南 大 鉉
- 環境保護課長 李 敬 洙
- 家庭福祉課長 朴 靜 子
- 產 業 課 長 金 時 漢
- 地域經濟課長 姜 慶 錫
- 畜 産 課 長 鄭 義 秀
- 山 林 課 長 李 基 椿
- 建 設 課 長 洪 基 杓
- 都 市 課 長 權 純 喆
- 社會指導課長 崔 泰 榮

○ 議會事務課

- 事 務 課 長 李 京 植
- 專 門 委 員 辛 教 善
- 議 事 係 長 咸 京 鎬

地方行政主事補 邊 相 得

地方行政主事補 李 鏡 均

【 議 席 】

○ 議席表 ( 13 面에 실음 )



【 報 告 事 項 】

○ 第35回 平昌郡議會 臨時會 召集

( 地方自治法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依據 召集 )

○ 文書發送

○ 平昌郡 移送

· 平昌郡資源의 節約斗 再活用 促進에 關한  
法律違反者에 對한 過怠料賦課徵收條例  
案

· 平昌郡住民所得支援 및 生活安定基金運  
用管理條例案 ( 以上2件 1995年8月7日 )

· 平昌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 1995年8月8日 )

· 平昌郡議會議員日費 및 旅費支給에 關한  
條例改正條例案 ( 1995年8月9日 )

○ 條例公布通知

· 위 條例 4件 條例公布通知

( 1995年 8月 25日 - 平昌郡守 )

○ 議案接受

·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  
入歲出決算承認의件 ( 1995年8月30日 )

· 大和都市計劃事業決定에 對한 意見提示  
의件 ( 1995年9月5日 )

·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  
認의件 ( 1995年9月22日 )

·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 등 改正條例  
案

· 平昌郡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 등 改正條  
例案 ( 以上 2件 - 1995年9月29日 )

· 平昌郡政調整委員會條例 등 改正條例案

· 平昌郡條例, 規則等公布에 關한 條例 등  
改正條例案 ( 以上2件 - 1995年10月10日 )

○ 一般文書接受

· '95年度下半年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  
認計劃 ( 10月5日 - 禹康鎬議員外6人 )

○ 人事發令

· 平昌郡議會 地方行政7級 咸仁柱

· 平昌郡議會 地方機能9等級 金容培

- 以上 2名 平昌郡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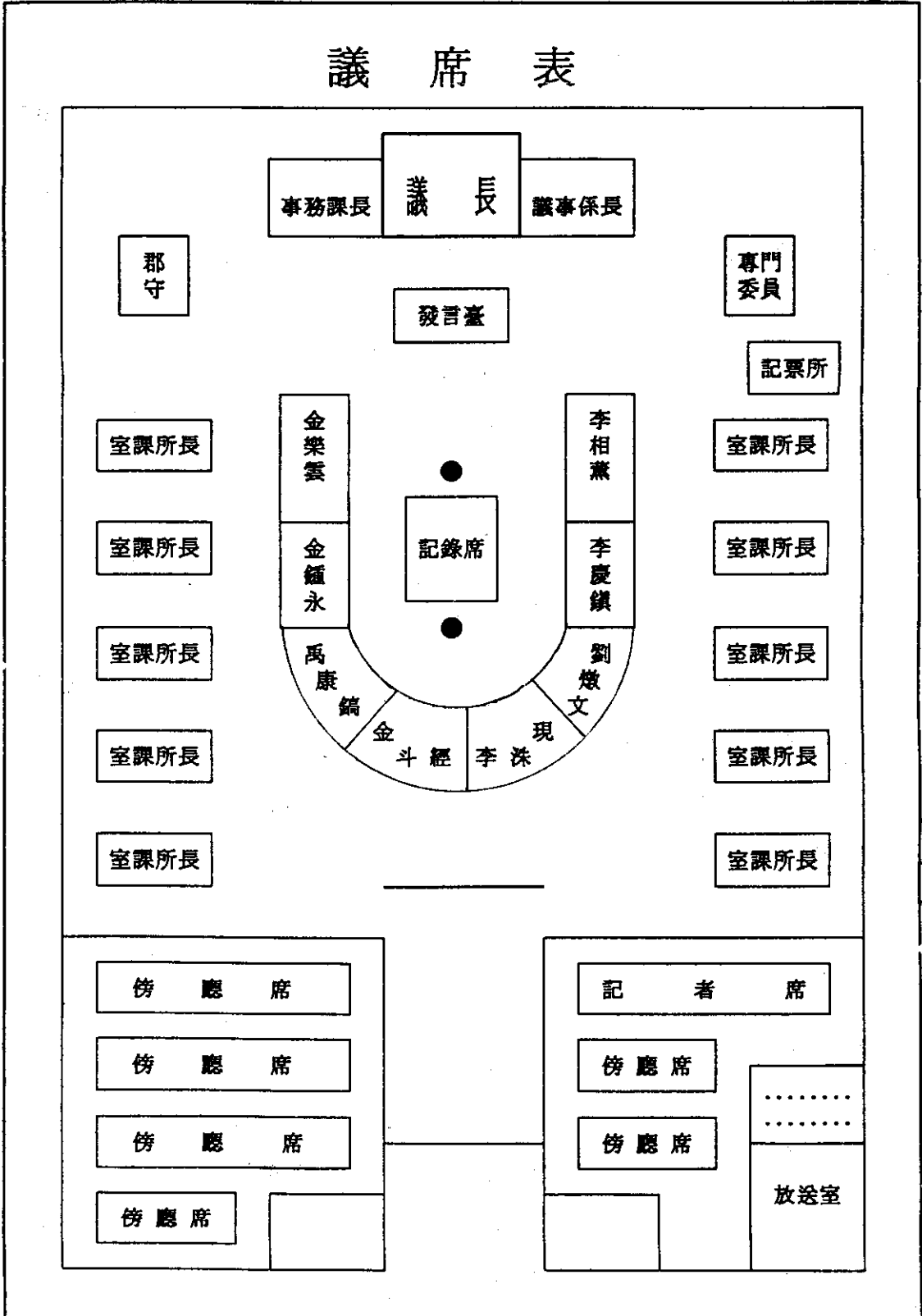
· 平昌郡 地方行政7級 李鏡均



· 平昌郡 地方機能10等級 鄭善澤

- 以上 2名 平昌郡議會로

# 議 席 表



# 의 사 일 정

○ 제3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95.10. 16. ~ 10.28.(13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95.10.16(월) 11:00	-	○ 개 회 식	본회의장
11:20	제1차 본 회 의	1. 제3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3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5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보고의건 4. 대화도시계획사업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휴회의건	* 휴 회 '95.10.17 - 10.27 (11일간)
10.17(화) 09:30	군정 주요 사업장현지 확인	○ 도암면	
10.18(수) 09:30	▪	○ 전부면	
10.19(목) 09:30	▪	○ 용평면	
10.20(금) 09:30	▪	○ 봉평면	
10.21(토) 10:00		○ 결과토의 및 미진사업장 확인	
10.22(일)	-	○ 일 요 일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23(월) 09:30	군정 주요 사업장현지 확인	○ 대화면	
10.24(화) 09:30	"	○ 방림면	
10.25(수) 09:30	"	○ 미탄면	
10.26(목) 09:30	"	○ 평창읍	
10.27(금) 10:00	"	○ 현지확인결과 종합	
10.28(토) 12:00	제2차 본 회 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995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 확인결과보고의견</li> <li>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안</li> <li>3.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 안</li> <li>4.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li> <li>5.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 정조례안</li> </ol>	